KOSHA GUIDE X - 46 - 2011

물류창고의 화재 리스크 감소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백종배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Mark Tweeddale, Managing Risk and Reliability of Process Plants, 2003
 - KOSHA GUIDE X-1-2011,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
 - KOSHA GUIDE X-2-2011, 리스크 처리 방법에 관한 지침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X - 46 - 2011

물류창고에서 화재 리스크 감소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물류창고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고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는 화재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"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"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화재 유해위험요인

- (1) 물류창고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화재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심각한 사고결과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열에 의한 화상
- (나) 타지 않는 독성이나 자극성 물질에 포함된 증기 및 독성이나 자극성 연소부산물 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
- (다) 오염된 소화용수로 인한 환경피해

X - 46 - 2011

- (라) 물류창고 및 주변시설에 대한 재산피해
- (마) 잔존하는 불씨에 의한 화재현장의 재발화 및 오염
- (2) 물류창고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인화성, 폭발성, 독성물질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경우
- (나) 포장재가 가연성인 경우
- (다) 포장재 주변의 부적합한 환기시스템에 의해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라) 수직으로 적재된 저장공간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될 가 능성이 있는 경우
- (마) 차폐된 공간 때문에 국부적인 화재에 의한 열이 유지되어 일정 거리가 떨어진 다른 물질에 열을 가하거나 화염이 수평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3)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점화원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나화(Naked flame)
- (나) 용접
- (다) 전기 라디에이터 및 히터
- (라) 전기 배터리 충전기, 전기장치, 전기조명장치 등
- (마) 복사열
- (바) 저장물질의 온도를 높이기 쉬운 거리에 위치한 증기 라인이나 전기 케이블 등

X - 46 - 2011

- (사) 지게차 및 기타 차량의 배출가스에 의한 불꽃
- (아) 불꽃(Spark 등)
- (자) 정전기
- (차) 자연발화

5. 물류창고 화재에 의한 독성가스 유해위험요인

- (1) 물질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스가 생성되고, 나무, 종이, 천연수지 및 인조수지, 플라스틱과 같은 일반물질과 화학물질은 다양한 농도의 질식성 또는 독성을 갖는 연소가스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가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다양한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
- (나) PVC와 같은 플라스틱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염화수소
- (다)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시안화수소
- (라) 화재 시 염소계 용제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겐
- (마) 이산화황
- (바) 질산계 산화물
- (사) 연소되지 않은 물질의 증기 또는 분진

6. 화재 리스크 감소방안

6.1. 일반사항

X - 46 - 2011

- (1) 물류작업에 필요 없는 작업은 물류창고의 외부에서 하도록 운영방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물류창고에서 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써 화재의 원인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용접, 프레임 절단 또는 연삭작업을 포함한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저장된 물질에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
- (나) 유지보수 활동, 기계공구에 의한 발화, 연삭기에 의한 불꽃이나 용접으로 인한 화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(다) 담배꽁초, 전기 라디에이터, 사무실의 기계 등은 사무실 내에 있는 종이류를 연소 시켜 다른 공간으로 화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음
- (라) 기타 화재와 관련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있음
- (3) 바람직한 운영방침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,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허가되지 않은 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조치
- (나) 금연규정의 철저한 적용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
- (다) 복도에 임시저장을 금지하고, 지정된 저장장소에 규정에 맞게 보관
- (라) 저장물질을 너무 높게 쌓아서 스프링클러의 설계부하를 초과하거나 스프링클러 분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
- (마) 누출된 물질의 청소 및 폐기를 포함한 일반적인 청소
- (바) 인화성, 독성 및 기타 물질을 개별적으로 저장
- (사) 화재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련 담당자가 점검

X - 46 - 2011

- (아) 비상상황절차 및 소방절차의 실습 및 숙지
- (자) 오래된 재고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고품목의 순환회전
- (차) 자연발화성 물질의 열 축적 방지

6.2. 물류창고의 위치 선정

- (1) 화재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독성연기에 의한 문제 때문에 화학물질 물류창고는 주거지역, 학교, 병원 및 쇼핑센터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충분하게 떨어져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식료품 처리 및 독성 화학물질 보관과정은 서로 피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촉한 않도록 화학물질 물류창고는 식료품 처리시설과 격리하여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화학물질 물류창고와 인접시설 또는 건물 사이의 필요한 안전거리는 수학공식에 의한 분석을 적용하거나 경험을 기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- (5) 소방차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측면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건물 또는 시설물과 충분한 완충거리를 가진 통행도로가 있어야 한다.

6.3. 물류창고의 배치

- (1) 화재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대형 물류창고는 방화벽을 통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.
- (2) 물류창고 시설 중 일부를 사무실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물류창고 공간 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용도별로 분리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는 공간들은 다음과 같다.

(가) 사무실

KOSHA GUIDE X - 46 - 2011

- (나) 화장실 및 라커룸
- (다) 체력단련실
- (라) 배전실
- (마) 보일러실
- (바) 배터리 충전실
- (3) 위에 언급된 장소에 관계없이 전기장치, 전기 라디에이터, 사무용 기계와 같은 매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제품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물류창고 내의 각 구역마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